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760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도 결산결과 예치금과 결산 지적사항, 2020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비고
합 계	272,081	393,570	121,489	
중소기업 금융지원	260,648	314,280	53,632	
중소기업직접융자	215,000	265,000	50,000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44,820	47,320	2,500	
기타 비용자성 사업비	828	960	132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1,000	1,000	
재무활동	10,433	78,590	68,157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 예수금상환	2,618	2,618	-	
여유자금 예치	7,815	75,972	68,157	
행정운영경비	1,000	700	△300	
기금관리비	1,000	700	△300	

나.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	변경	증감	항목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72,081	393,570	121,489	합계	272,081	393,570	121,489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74,045	174,045		사업비	용자금	215,000	265,000	5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이자보전금	44,820	47,320	2,500
예치금 회수	76,036	145,325	69,289		가비용성사업비	828	960	132
					기금업무대행수수료	-	1,000	1,000
일반회계 전입금	19,000	71,200	52,200	재무동	예치금	7,815	75,972	68,157
				예수금 이자	2,618	2,618	-	
				행정운영경비	1,000	700	△3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 ('20년 1회·3회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은하 (☎2133-5190)